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운영기준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캠퍼스혁신파크 내 산학연혁신허브를 임대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사업 수행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학연혁신허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캠퍼스혁신파크”란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부터 본격 기업경영까지 가능하도록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46조의8)를 말한다.
2. “산학연혁신허브”란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등에게 저렴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내에 건축하는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말한다.
3. “운영기간”이란 캠퍼스혁신파크 산업단지 조성 및 산학연혁신허브 건축을 위해 LH가 선 투입한 사업비를 산학연혁신허브 임대·운영 등을 통해 회수하는 기간으로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를 말한다.
4. “산학연혁신허브 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산학연혁신허브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임대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다.
6.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사업시행협약서 상 “스타트업”)
7.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업시행협약서 상 “BI(Business Incubation)”)
8. “성장기업”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난 기업을 말한다. (※ 사업시행협약서 상 “POST BI”)
9. “수선비”는 산학연혁신허브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능률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를 말한다.

제2장 공급준비

제3조(임대계획 수립 등) ① LH는 산학연혁신허브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구가 연구개발특구인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임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하고자하는 건축물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6. 위치도
7. 단지조성현황도
8. 임대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조서 및 도면

제4조(입주자격) 산학연혁신허브에 입주가능한 기업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기업, 중소기업, 글로벌창업기업, 정부·민간 연구소기업, 연구기관 등이며, 필요시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으로 한다.

제5조(임대면적 구성 및 배분)

- ① 산학연혁신허브의 기업임대면적은 건축 총 연면적의 80% 이상으로 한다.
- ② 산학연혁신허브 내 입주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대학, 지자체 및 관계법령이 정한 관리기관이 사용하는 면적(대학 등 사용면적)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분은 LH와 사용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입주기업 모집공고) ① 산학연혁신허브의 입주기업은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연혁신허브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임대사업자의 명칭
2. 시설별 임대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3.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임대가격 및 납부방법
5. 입주예정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기업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시설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예비입주기업 선정 범위 및 자격의 유효(필요 시)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모집공고 시기는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대학·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관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재공급(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을 포함한다) 시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 100분의 10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제3호·제4호·제8호의 중요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신청접수일 첫째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입주기업 모집 시 모집방법은 임대면적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LH는 임대여건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임대면적 단위를 일괄 공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입주기업 모집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등으로 한정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이 심하고 중량 및 부피가 과다하여 산학연혁신허브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 선정) ① LH와 대학이 1차 서류심사(자격, 업종 등 심사) 및 2차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적격 기업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적격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임대면적을 반영하여 배정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배정한다.

③ 제1항의 적격기업 선정 기준점수, 평가항목 및 점수는 LH와 대학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입주) ① 산학연혁신허브 입주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가능하다.

② 입주 대상자들은 잔금 등을 완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후 해당시설의 열쇠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제3장 임대공급

제9조(임대신청) 산학연혁신허브 시설을 임대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신청기간 내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예약금) ① LH는 임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임대면적별 임대보증금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예약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신청예약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전환한다.

②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LH에 귀속된다.

제11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상업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3. 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② 계약체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등) ① 산학연혁신허브의 각 임대면적별 연간 임대료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재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변시세, 임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연간 임대료로 같음할 수 있다.

② 산학연혁신허브의 입주기업 자격 및 임대조건,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 자격 및 임대조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임대료는 시세의 20~80%를 적용하되, 임대조건은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가. 예비창업자 : 시세 20%
 - 나. 창업기업 : 시세 60~70%
 - 다. 성장기업 : 시세 80%
 - 라. 연구소, 유관기관 : 시세 80%
2. 임대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연간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임차시설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시설 등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시세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LH는 투자금 회수 여건에 따라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성장단계별 임대료 및 임대면적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전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1. 최초 임대료는 입점일(시설의 열쇠 교부일을 포함한다)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하 “임대 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3월이 되는 월의 말일(이하 “임대료 산정 종료일”이라 한다)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되, 3월이 초과되는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더한 임대료를 계약체결 시에 수납한다.

2. 다음 회차는 전 회차 임대료 산정 종료일(말일)에 3개월 단위로 수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임대료 산정 시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 1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수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의 잔금은 임대 개시일까지 수납한다.

제14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최장임대기간

가. 예비창업자 : 2년

나. 창업기업 : 10년

다. 성장기업, 연구소, 유관기관 : 10년

라. 최장임대기간은 임대기업 특성, 사업여건 등에 따라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2. 최초계약기간 : 2년

3. 갱신단위 : 2년(평가 후 재계약)

② 시설의 임대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2월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장임대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임대료 재평가 및 임대보증금 등을 재산정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계약변경에 수반되는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연손해금 및 변제충당 순서) ① 임차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LH의 판매관련 제 이율에 따른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2항의 지연손해금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납한 임대료의 변제 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관리비, 임대료 순으로 한다.

제16조(전대 및 양도 금지) 임차인은 타인에게 시설을 재임대하거나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철거이행보증금) ① 임차인이 시설에 기계장치 및 인테리어 등의

설치 및 원자재 등을 적치하는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철거이행보증 금액은 산학연혁신허브 관리를 담당하는 LH 지역
본부 관내 소재 2개 이상의 전문업체(감정평가사 포함)가 원상회복에 소요될
실제 규모를 추정하여 산출한 철거공사비 예상견적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제18조(임대료 등 재산정) ① 산학연혁신허브 각 임대면적의 분할 및 통합
등으로 인하여 임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임대 당시의 제곱미터(m²)당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분은 다음 회차 임대료 납부
약정기일에 추가 수납하여야 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감소분은 다음
회차 임대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의 기일까지 추가 철거이행보증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사망·실종 등의 선고 또는 임차인에 대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등의 개시심판 등이 있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4. 임대료를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5. 임대건축물을 허용된 용도 또는 업종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행하는 경우

6. 적정 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 등을 반입,
 설치한 경우
7.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때
8. 건물의 형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때
9. 공동시설,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한 때
10. 집합건물에 위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한 때
11.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때
12. 그 밖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때

② 임차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기타 계약 이행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임차인의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LH에 귀속
되며, 대상 임대시설을 반환받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까지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환급할 경우 연체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기타 임차인의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20조(임대시설 원상회복)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대상시설을 1개월 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반출하도록

한다. 다만, LH가 시설 등을 매수하거나 그 존치를 허용한 경우 또는 LH의 동의하에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시설에 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원상회복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LH가 대신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제 비용은 제19조에 따라 수납한 철거이행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변상금) ① 임대기간 종료(중도해지를 포함한다) 후 대상 임대시설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자(제21조의 원상회복 기간을 초과하여 점유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은 임대기간 종료일(제21조 임차인의 원상회복 기한을 포함한다) 익일부터 무단사용을 종료한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4장 운영

제22조(운영의 주체와 기간) ① LH와 대학은 산학연혁신허브 운영기간 동안 산학연혁신허브를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연혁신허브 운영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간만료 전 LH와 대학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에 대한 기관별 역할) LH, 대학, 지자체의 산학연혁신허브의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은 대학 및 지자체와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서에 따른다.

제24조(운영권 이관) LH는 산학연혁신허브에 대하여 LH가 선투입한 사업

비가 조기 회수되고, 운영이 안정화될 경우 대학으로 운영권을 이관할 수 있으며, 이양 또는 위탁 등 이관의 방식과 시기는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소유권 이전) 대학의 유형에 따른 산학연혁신허브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협약서에 따른다.

제5장 관리

제26조(건축물관리 및 관리업자 선정) ① LH는 산학연혁신허브 건축물관리주체로서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업자는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소 운영 및 관리비 징수(관리비 예치금 포함), 일상 수선, 청소, 경비,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물관리,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27조(관리비 분담) ① 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이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 이후의 공실 관리비는 LH가 부담한다.

② 제5조2항에 따라 대학 등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전기, 수도 등 관리비는 대학 등이 부담한다.

③ 산학연혁신허브의 공용면적에 대한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는 대학 등을 포함한 입주자가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제28조(수선비 분담) 운영기간 동안 산학연혁신허브 내 임대면적의 수선비는 LH가 부담하며, 대학 등 사용면적에 대한 수선비는 사용 주체인 대학

등이 부담한다.

제29조(제세공과금 등 분담) 대학의 유형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분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국립대

가. LH는 건물 등기에 따른 각종 비용, 대학의 산학연혁신허브 소유에 따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대학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나. LH는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무상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고 이후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되, 대학은 LH가 납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학연혁신허브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사립대

가. LH는 건물 등기에 따른 각종 비용, 건물소유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나. LH가 대학에 산학연혁신허브 소유권 이전시 건물소유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대학이 부담한다.

제30조(행위금지) ① 임차인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존 시설물의 원형 변경, 개보수, 신규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가 정한 공사도면 등을 제출하여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광고물 설치 등은 LH의 관리 및 통제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③ 입주 지정기간 이전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테리어공사, 개별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1조(임대실태조사) LH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임차인의 임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산학연혁신허브 관리·운영위원회

제32조(설치 및 해산) ① 산학연혁신허브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산학연혁신허브 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협약 당사자는 산학연혁신허브 건축 준공 전에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완료와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며, 협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관리·운영위원회를 해산한다.

제33조(구성 및 기능)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의 사업총괄책임자, 부위원장은 LH의 캠퍼스혁신파크 담당 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지자체(지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한함), LH에서 추천하는 각 1인
2. 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임하는 자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관리·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학 소속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시행협약서에 따른다.

제34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개최 계획을 미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운영위원회 회의는 현장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시 서면 또는 비대면회의(영상회의) 형태로 개최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제3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장과 위원은 안건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6조(대학별 운영기준) 위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연혁신허브 운영 기준은 대학 및 LH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